#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86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김희정·박준태·김종양

김은혜 • 박성민 • 김상욱

우재준 • 서일준 • 권영진

서범수 · 김도읍 · 김승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,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. 9. 29.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, 채무금 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

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).

법률 제 호

##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시행이후"를 "시행 전에"로, "경우부터"를 "경우에도"로 한다. 같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제2조(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3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---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 행 전에---------<u>경우에도</u>----. 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<삭 제> 등 공개요건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 은 제34조의5제1항제2호의 개 정규정에 따른 성명 등 공개요 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.